

안전을 위한 형평성 제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찰 개혁에 고려해야 할 인권 — 핵심 요약문

제출 | 2021 년 11 월

전문(영문본)은 bchumanrights.ca/SCORP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조직 전반의 구조적 인종 차별 존재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의 시간은 끝났다. 경찰의 인종 차별은 다른 주에서도 마찬가지나 특히 BC 주에 거주하는 원주민과 흑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오랫동안 경찰의 차별적 관행에 시달려온 여러 지역 사회는 BC 주 입법부의 경찰법개혁특별위원회(SCORPA)에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변화를 촉구해왔다. 지역 사회가 입은 피해 사실은 밴쿠버 경찰청, 넬슨 경찰청, 씨리, 던컨, 프린스 조지 RCMP 의 데이터 분석 결과(전문 부록 B 참조)에서 확인된다.

- 관할 구역에 따라 원주민, 흑인의 체포/기소 사건 비율이 타인종에 비해 터무니 없이 또는 과도하게 높다. 다수의 경찰 관할 구역에서 히스패닉, 아랍/서아시아인의 체포/기소율도 불균형적으로 매우 높다.
- 치안 활동의 대다수에서 정신질환자들을 다룬다. 많은 관할 구역 내에서 이러한 유형의 치안 활동에 원주민, 흑인, 아랍/서아시아인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과도하게 높다.
- 일반적으로 여성의 체포/기소 사건 비율은 낮으나, 조사된 BC 주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원주민 여성의 체포율은 터무니 없이 또는 과도하게 높다. 예를 들어, 원주민 여성의 체포율이 백인 남성의 체포율보다 높다.

이러한 인종간 격차는 경찰 관행 자체의 편견에서만 비롯된 산물은 아니다. 많은 기관의 구조적 인종 차별이 원주민, 흑인, 기타 소외 계층을 지나치게 범죄자로 몰아간다. 여러 요인의 융합된 영향과 상관없이 경찰은 사법 제도 및 정부 전반의 다른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원주민과 흑인(그리고 Wortley 교수의 데이터 분석에 자세히 설명된 그 외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BC 주 인권 위원장(Human Rights Commissioner)은 이 제안서로 BC 주의 다양한 치안 활동 개혁을 권고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하여 구조적 인종 차별을 줄이고 안전을 제고하고자 한다.

4 가지 핵심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경찰 개혁안은 아래와 같다.

- 이 나라의 치안 활동은 개척민의 정착을 위해 원주민을 통제하는 식민지 통치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
- 치안 활동의 주요 목적은 지역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지키는 것이다.
- 경찰의 차별적 관행은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보다 그 기반을 오히려 약화시킨다. 반대로, 형평성은 지역 사회 안전에 필수적이다.
- 경찰 개혁은 가능한 일이고 필수적이다.

아래 개혁안은 치안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원주민에 대한 BC 주의 의무 실현

1. BC 주 정부는 정부 대 정부의 관점에서 원주민과 협력하여 **경찰법** 입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2. BC 주 정부는 원주민이 **경찰법** 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 세분화

3. 공공안전법무부(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olicitor General) 장관은 경찰이 치안 활동의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종 기반 데이터, 기타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도록 **경찰법**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은 경찰청장(the Director of Police Services)이 원주민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을 활용하고 데이터 법제에 따라 설립된 지역사회거버넌스위원회(Community Governance Board)와 협력하여 세분화된 치안 데이터 기준을 개발 및 감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5. 지역사회거버넌스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인권 위원장은 경찰청장에게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원주민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을 활용하여 세분화된 경찰 데이터의 수집, 사용, 공개에 관한 **경찰법 제 40 조 (1)(a.1)(vii)**항에 따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6. 공공안전법무부는 지역사회거버넌스위원회와 협의하여(또는 지역사회거버넌스위원회가 설립되기 전 지역 사회와 소통하여) 주 정부 데이터 보존 일정을 수립하고, 모든 경찰 조직이 연구 및 기타 합법적인 목적으로 데이터 창고에 세분화 및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유지관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7.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BC 주 개인정보보호감독관실(the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for B.C.)에서 주 정부 치안 데이터 기준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이나 사용, 공개에 관한 불만이나 우려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노상 검문

8. 공공안전법무부는 이 제안서 47 페이지에 세부 명시된 바와 같이 경찰이 재량권 행사를 줄이고 경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며 정보는 책임 목적으로만 수집되도록 주 정부 치안 기준 6.2 항 불심 검문(또는 불심 검문 관련 하위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9. 공공안전법무부는 차량 검문에 특정된 공정한 치안 기준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모든 경찰 조직이 음주 단속 등 사전 예방적 차원의 치안 활동 시 경찰관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여 편견 없는 차량 검문 수행을 명시해야 한다.

기존 경찰 업무의 이관

10. BC 주 정부는 원주민 정부, 연방 정부, 주 정부, 자치 정부 등 각층의 정부와 협력하여 경찰 예산 재편성을 위한 틀을 구축하고, 정신 질환 및 물질 남용 위기, 노숙과 기타 문제 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형사적 대응보다는 사회 서비스 제공 증대를 통한 민간 주도 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



11. 공공안전법무부는 경찰이 정신 건강 위기에 처한 환자 사건에 출동할 때 자동 최초 대응자가 아닌, 최후 수단으로만 대응하도록 911 서비스를 수정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 제안서 58 페이지에 나와 있다.
12. BC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이 민간(즉, 경찰이나 보건 당국이 아닌 지역 사회 기관) 주도형 정신 건강 및 물질 남용 서비스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
 - 의학적 진단 및 치료 모델 이상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의료인, 간호사, 사회 복지사, 동료 등 여러 전문 분야의 인력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 센터 구축
 - 심각한 정신 건강 및 물질 남용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복합 요양 시설 및 약물 남용 치료에 대한 투자 증대. 자세한 내용은 본이 제안서 58 페이지에 나와 있다
13. BC 주 정부는 본 주의 노숙 문제 해결 전략에 치안, 노숙, 정신 건강, 물질 남용의 교차점을 다루어야 한다.
14. 각 교육청은 학교 전담 경찰관(SLO) 프로그램을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증거로 입증하지 않는 한 SLO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 교육청은 SLO 프로그램 평가 시 SLO 프로그램을 유지할 경우 원주민, 흑인, 기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5. SLO의 심리사회적, 교육적 역할은 기타 과외 활동 코칭 및 지도, 아동 및 청소년 상담, 트라우마 관련 접근법, 성폭행 예방, 물질 남용 교육, 학교 폭력 방지 등에 경험이 있는 민간인에게 맡겨야 한다. SLO 프로그램에 투자되려던 예산과 자원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민간인에게 가야 한다.

경찰의 책임

16. 법무부(the Ministry of Attorney General)는 RCMP에 대한 민간심사불만처리위원회(CRCC), 독립수사실(IIO), BC주 경찰불만감찰관실(OPCC), BC주 인권재판소가 다루는 불만이나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조언 및 대리를 제공하는 법률 구조 등 법률 지원 프로그램(legal advocacy programs)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17. 공공안전법무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IIO의 완전한 민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18. OPCC 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OPCC 의 완전한 민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19. 공공안전법무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CRCC 가 (BC 주 불만에 대응할 때) 완전한 민간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요구하는 계획과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20. 공공안전법무부는 BC 주 치안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into Policing)에서 권고한 대로 RCMP 를 OPCC 의 관할 하에 두거나, OPCC 와 CRCC 에 대해 법률 및 불만 처리 절차를 통합해야 한다.
21. 공공안전법무부는 OPCC 가 불만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모든 조사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불만에 대한 조사를 IIO 에 회부할 수 있도록 OPCC 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OPCC 의 권한이 확대되면 OPCC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22. 공공안전법무부는 *경찰법* 제 74 조 (2)(t.4)항에 따른 규정 제정권을 사용하여 IIO 의 권한에 성폭행 수사가 포함되도록 IIO 의 책무를 즉시 확대해야 한다. IIO 의 권한이 확대되면 IIO 조사관은 성 기반 폭력의 역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한다.
23.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서비스(Battered Women’s Support Services)가 SCORPA 에 제안한 “가정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해야 한다.
24. 법무장관은 BC 주 *인권법*을 개정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사회적 조건과 원주민 정체성을 보호 근거로 포함해야 한다.
25. 경찰 위원회가 관할 지역 사회, 특히 차별적 경찰 관행의 피해를 받는 지역 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경찰법*을 개정하여 모든 경찰 위원회에 원주민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6. 공공안전법무부는 BC 주의 여러 지역을 위한 지역 민간 경찰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설립하는 데 BC 주 RCMP 와 협력해야 한다.
27. 공공안전법무부는 경찰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위원회의 공개 보고 요건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28. BC 주 정부는 충분한 재원을 기반으로 탄탄한 원주민 민간 경찰 감독 기구(또는 관할 구역 내 공신력 있는 민간 감독 기관 내부의 지부)를 설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과 소녀(Missing and Murdered Indigenous Women and Girls)”의 최종 조사



보고서에서 촉구된 바와 같이 다양한 원주민의 문화적 배경을 포함하여 원주민 여성과 소녀, LGBTQ2SAI+ 사람들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원주민 민간 감독 기구가 가져야 할 권한은 이 제안서의 71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9. BC 주 정부가 원주민 민간 감독 기구를 설립할 때까지 원주민의 사망 또는 심각한 피해 사건에 대한 모든 조사를 감독할 민간 감시인을 임명해야 한다. 주 정부는 원주민 민간 감독 기구의 효과적 참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인권 위원장은 인권, 평등, 안전, 정의를 수호하고자, 경찰법개혁특별상임위원회(the Select Standing Committee on Reforming the Police Act)와 그다음 BC 주 정부는 기타 다수의 중요한 제안서와 더불어 본 권고안을 채택하고 BC 주에서 경찰의 역할을 재구상하는 데 주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